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12 기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호산 공인회계사 감사반(제 147 호)
공인회계사 문권식**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 귀중

2014년 2월 26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이하 "재단")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재단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특정목적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본 감사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재단은 재무제표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및 주석 2에 기재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기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부금수입의 경우 약정에 의거한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와 주석 2에 기재된 회계처리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 도량1동 576-4

공인회계사 문 권식



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4년 2월 26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본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